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참여예산제도란?

시민들이 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어, 상파울루 같은 대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뉴욕과 시카고, 스페인 세비아, 독일 리히텐베르크 등 전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럽 : 474~1,307 사례 / 남미 : 626~1,138 사례 / 아시아 58~109 사례



주권자인 시민이 자신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위임이 아닌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분권과 자치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2019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참여예산 목표 : 300억
- 주민참여 범위 : 사업제안, 결산, 예산 편성 방향 설정, 신규주요사업(3억원 이상)에 대한 의견 제시
- 참여방법 :
 - 인터넷 :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 우편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 FAX : 032-440-8632
- 참여기간 :
 - 2019년 2월~4월 (2020년도 본예산 반영 사업)
 - ※ 2019년 4월 이후 신청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또는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됨
- 문의 : 예산담당관실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 440-2242~3)
- 공모사업 유형

참여형

일반참여형(180억)

지역참여형(50억)

광역도시 문제 해결과 전체 시민편익을 위한 제안사업 공모

군·구 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발굴과 제안

계획형

시 계획형(50억)

동 계획형(20억)

청년, 여성, 다문화 등 관심계층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치를 통한 의제 발굴 및 사업계획 제안

동 단위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미착형 사업 발굴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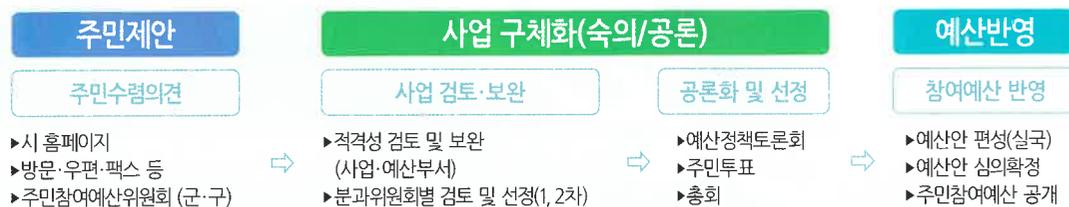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행정안전부는 200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면서,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지방개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 1999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
- 2011년 7월 관련조례 제정 및 모델개발을 위한 제도연구 의뢰
- 2012년 11월 조례 전면개정의 과정을 거쳐 2013년 5월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

· 운영절차(참여형)



· 운영절차(계획형)

